



안녕하세요~  
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참입니다.

개학과 함께 2020. 4. 15.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#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위

○



선거운동기간(2020년 4월 2일 ~ 4월 14일) 중에 친구에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자고 권유하거나 OO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, 또는 OO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.

다만,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#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행위

X

~~다른 반 이동~~



쉬는 시간,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,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OO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행위

X



OO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OO당의 입시정책 공약 홍보책자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, 이번 선거에서 OO당에 투표하자고 권유하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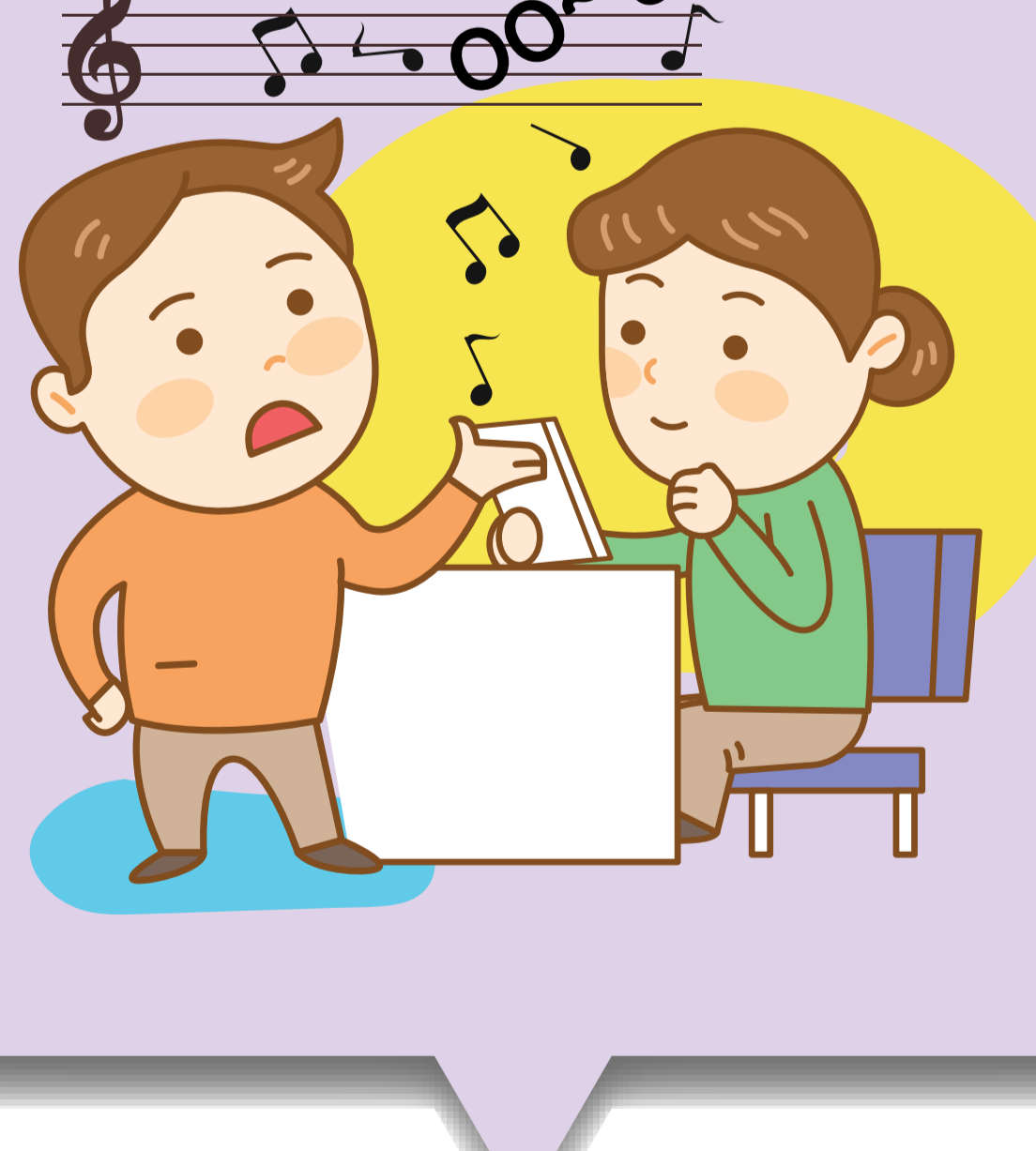
X

교육은OOO후보자에게



OO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맘에 들어서 '교육은 OO후보자에게!' 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교문 위에 걸고, OO후보자의 이름과 기호○번이 기재된 배지를 만들어 가방에 달거나 옷에 붙이고 다니는 행위

X



OO당을 지지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이 OO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OO당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OO당에게 투표해달라고 하는 행위

X



'OO 동아리' 또는 'OO동아리 대표(회장) OOO'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
많은 도움 되셨나요?  
다음 회차에 안내해 드릴 내용은  
금품제공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